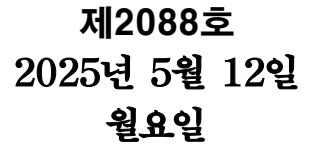


선 람	기관의 장



○ 조	례 제 2 1 5 7 호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 회 사 무 국	2
○ 조	례 제 2 1 5 8 호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 회 사 무 국	4
○ 조	례 제 2 1 5 9 호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 회 사 무 국	7
○ 조	례 제 2 1 6 0 호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 회 사 무 국	11
○ 조	례 제 2 1 6 1 호	남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의 회 사 무 국	14
○ 조	례 제 2 1 6 2 호	남동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기 획 예 산 과	22
○ 조	례 제 2 1 6 3 호	남동구 풍수해·지진재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전 총 괄 과	26
○ 조	례 제 2 1 6 4 호	남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복 지 정 책 과	31
○ 조	례 제 2 1 6 5 호	남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복 지 정 책 과	34
○ 조	례 제 2 1 6 6 호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보 육 정 책 과	39
○ 조	례 제 2 1 6 7 호	남동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청 소 행 정 과	41
○ 조	례 제 2 1 6 8 호	남동구 야생생물 보호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한 조례	환 경 보 전 과	46
○ 조	례 제 2 1 6 9 호	남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공 원 녹 지 과	52
○ 조	례 제 2 1 7 0 호	남동구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	교 통 행 정 과	57
○ 조	례 제 2 1 7 1 호	남동구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교 통 행 정 과	61
○ 조	례 제 2 1 7 2 호	남동구 논현유수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미 래 전 략 과	65
○ 조	례 제 2 1 7 3 호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평 생 교 육 과	75

회 관								
--------	--	--	--	--	--	--	--	--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5년 5월 12일

남동구조례 제2157호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가목 중 “재정경제국”을 “재정경제국, 안전교육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2025.3.10.)됨에 따라 남동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직제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에 안전교육국 편입 : (안 제6조제2항제2호가목)
⇒ 기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었던
여성가족과, 식품위생과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됨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5년 5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2158호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배우자 출산휴가일수는 별표3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일수로 본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13조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2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25.2.11.시행) 사항 반영하여 저출산 극복 및 일·가정 양립하는 근무환경 조성

☐ 주요내용

- 소속 공무원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경조사 휴일수를 10일에서 2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에서 25일)로 확대 (안 별표3)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5년 5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2159호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제4조,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영리
계약 및 수익계약 제한 위반
3.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위반
4. 의원의 갑질행위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징 계 기 준(제10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품위유지	○ 음주운전 - 면허취소 - 면허정지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 성폭력, 성희롱	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2. 청렴의무	○ 탈세 ○ 면탈 ○ 금품수수	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3. 영리행위의 제한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영리행위의 제한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지연등 ○ 겸직 거짓신고 - 미신고, 거짓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43조제6항 위반)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겸직금지	○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 금지 위반	공개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상임위원회 변경)
6. 갑질행위	○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의원,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 징계대상 위반 행위를 확대하여 지방의원 징계실효성을 제고하고, 그 밖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등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원의 징계대상 행위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0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5년 5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2160호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
의 부분) 본문 중 “제2조 및 제4조”를 “제2조부터 제4조까지”로, “의정
활동비”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1항이 무죄 또는 제2항의 처분이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처분 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 또한 지급을 제한(안 제8조제1항)
-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하는 규정 신설(안 제8조제2항)
- 법원판결에 의하여 무죄 및 징계취소 확정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소급 지급하는 규정 신설(안 제8조제3항)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5년 5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2161호

남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구성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3. “공무원 등”이란 의회 소속 공무원과 의회에 배치된 청원경찰, 청사 환경미화 근로자를 말한다.

4. “피해 직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남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남동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 ① 누구든지 의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

해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 또는 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와 내용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고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받는 자는 구술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구술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구술신고를 접수받는 자는 구술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날인을 받거나,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녹취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상담 및 조사를 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 전문가 등) 및 외부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징계 및 인사 처분 등) ① 의장은 제8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판단된 경우, 「남동구의 회 회의 규칙」 제82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남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의장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 제82조에 따라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의 관리자 또는 상급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비밀 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1명 이상 둘 수 있다.

②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기간 및 괴롭힘 발생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심리상담 치료 및 회복
2. 피해자에 대한 법률자문
3. 그 밖에 의장이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담, 조사 및 협력 등을 이유로 관련 직원(피해 직원 등,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 등을 말한다)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상담·조사·협력 등

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허위신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4조(비밀유지)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 상담 직원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는 사람
2.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3.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

②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실태조사) 의장은 필요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남동구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 구성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의장의 책무 (안 제3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예방 (안 제5조~제6조)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조치 (안 제7조~제8조)
- 징계 및 인사처분 (안 제9조)
-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안 제10조)
- 피해 직원 등의 보호 및 불이익 조치 금지(안 제11조~제12조)
- 허위신고 및 비밀유지, 실태조사 (안 제13조~제15조)

조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5년 5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2162호

남동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및 협회 등과의 업무제휴 및 협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국내·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 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구가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

(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구가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 주관부서, 대상기관, 체결일자, 주요내용, 추진상황, 변경상황 등
2. 업무제휴 및 협약 이행의 이행실적 및 평가결과

② 업무제휴 및 협약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는 연 1회 이상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의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료할 수 있다.

1. 업무제휴 및 협약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상대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유지가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및 협약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구의회 보고) 구청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 현황, 추진상황 및 평가결과 등을 매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제휴 및 협약의 공개) 구청장은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체결·종료 등 주요내용을 구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업무제휴 및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적용범위(안 제3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 사후관리 및 평가(안 제5조)
- 구의회 보고(안 제6조)
-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공개(안 제7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풍수해·지진재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5년 5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2163호

남동구 풍수해·지진재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서 정의하는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남동구민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그 외 용어의 뜻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海溢)·대설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지진재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3.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4. “온실”이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풍수해·지진재해로 인한 연간 피해 상황을 실태 조사·분석하여 풍수해·지진재해 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풍수해·지진재해 보험료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목적물에 관한 사항
2.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 지원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3.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의 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풍수해·지진재해 보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보험목적물) 보험료 지원의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과 시설물 및 그에 부수되거나 포함되는 동산(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으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3.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제5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은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3.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제6조(보험료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 부담 보험료(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본인 부담 보험료의 지원 한도는 행정안전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실무편람에 따른다.

제7조(보험료 지급 방법) ① 구청장이 보험료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 금액을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험사업자는 구청장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현황서를 요청할 경우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홍보)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 풍수해·지진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풍수해·지진재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 구민의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및 손해 발생 시 실질적 보상으로 구민의 피해보상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3조)
- 보험목적물 및 지원대상·내용(안 제4조~제6조)
- 보험료 지급방법(안 제7조)
- 보험료 환수조치(안 제8조)
- 보험가입 홍보(안 제9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5년 5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2164호

남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남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남동구 내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 체계 구축·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사회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협의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 사업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남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
- 지원사업(안 제3조)
- 예산지원(안 제4조)
- 지도·감독(안 제5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5년 5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2165호

남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과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남동구에서 추가로 예우를 정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남동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3.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사상자가 된 후 구로 전입한 경우

제4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망자의 유족 또는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5조(의사상자 지원) 구청장은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구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
3. 구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공연 입장료 감면
4. 명절(설, 추석) 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5.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의사상자 예우) 구청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른 포상
2. 구 단위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 소개
3. 남동구 소식지, 구정현황 등 기록물 발간 시 공적 게재

제7조 (지원신청)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및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남동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남동구에서 추가로 예우를 정함으로써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적용범위(안 제3조)
- 의사상자 지원(안 제5조)
- 의사상자 예우(안 제6조)
- 지원신청(안 제7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5년 5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2166호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육아휴직자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육아 프로그램 및 교육을 이수한 경우

제5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육아 프로그램 및 교육 이수증 1부(최초 신청 시)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성도 주 양육자로서 아이를 키우는 데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그 과정에서 아빠의 유익한 교육 수행을 통해 보다 더 내실 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공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 교육 이수 의무사항 및 신청서류 추가 신설
(안 제3조제4호, 제5조제3항제3호)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5년 5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2167호

남동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환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 구민 및 단체 등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협

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순환경제사회 전환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①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에 순환경제 문화가 널리 보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순환경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시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집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추진 등을 위하여 순환경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2항의 통계조사 계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 구매)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순환경제 기반 구축)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순환경제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품 등의 순환이용 촉진
2. 순환이용 체계의 구축
3. 그 밖에 구청장이 순환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사업자, 구민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구민 및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 억제, 자원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남동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구민실천사업
3.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법제상·행정상 조치 등) 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의 완화 등 필요한 법제상·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집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 구매, 순환경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 교육 및 홍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 법제상·행정상 조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조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야생생물 보호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5년 5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2168호

남동구 야생생물 보호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동구에서 서식하고 있는 야생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환경분야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생생물 보호 및 그 서식지 보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생물 보호와 서식지 보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자연환경조사) ① 구청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연생태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자연환경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생물의 다양성 및 분포 상황
2. 식생 현황
3. 보호 야생생물, 멸종위기종,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 현황
4.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연환경조사원) ① 구청장은 자연환경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생태환경 활동가 및 자연환경조사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조사원에게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조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대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자연환경보전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정부에서 허가한 관련학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지역에서의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기관·단체 등

제7조(서식지 보호) ① 구청장과 구민은 서식지 보호가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식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1. 서식지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서식지는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서식지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연환경 보전 및 보호활동을 위한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자발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야생생물을 보호하는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주민,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야생생물의 보호
2. 자연환경 보전 및 자연자산의 보전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생태계 교란 생물 방제 필요 조치 등
4. 자연환경 보전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연환경 보전 및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교육·홍보)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교육·홍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생태계 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에 서식하는 다양한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그 서식지를 보전하여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자연환경조사 및 자연환경조사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서식지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자연환경 보전 및 보호활동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제9조)

조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5년 5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2169호

남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마을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마을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도시의 조성) ① 구청장은 도심 내에 구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 복지의 증진)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구민 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원문화의 조성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제반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원문화 시설 조성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정원박람회 개최
6.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정원에 관한 경연 및 시상
8. 정원 캠페인의 추진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정원문화의 확산 장려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도심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구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및 민간정원 개방
2. 구민 대상 정원문화에 대한 교육
3.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구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인증)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마을 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마을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10조(마을정원사의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마을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정원문화 진흥·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정원도시의 구성과 정원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원도시의 구성, 구민 복지의 증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정원문화의 조성 등,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정원문화의 확산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인증,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5년 5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2170호

남동구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남동구민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운전을 한 경우를 말한다.
2. “음주운전 사고”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음주운전 예방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음주운전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기본계획 수립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음주운전 예방활동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
2. 음주운전의 예방 및 운전자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3.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음주운전 예방활동) 구청장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1. 음주운전 예방 교육
2. 음주운전 예방 관련 홍보 및 캠페인
3. 관계 기관과의 연계협력

4.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가 공익활동으로 제5조 각 호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이 음주운전 예방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음주운전 예방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구민의 안전 확보와 생명 보호를 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음주운전 예방 기본계획,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지원 등,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5년 5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2171호

남동구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교통약자
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나.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다. 70세 이상의 고령자

라. 임산부 및 영유아 또는 고령자를 동반한 사람

2. “교통약자 탑승차량”이란 교통약자가 탑승한 차량을 말한다.
3. “배려주차구역”이란 교통약자 탑승차량 운전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4. “공공시설”이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단체에서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5. “공중이용시설”이란 공공시설 이외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보호와 사회·경제·문화 활동 증진 등을 위해 공공시설에 배려주차구역 설치를 장려·확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마트, 병원, 은행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배려주차구역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4조(관계 기관 협의 등) ① 구청장은 남동구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와 협의하여 배려주차구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다.

제5조(배려주차구역 대상시설) ① 구청장이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동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2.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로 배려주차구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배려주차구역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배려주차구역 바닥면에는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표시를 하여야 하며, 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임산부 또는 영유아 탑승차량을 위한 주차장이나, 여성 전용주차장이 설치된 곳은 겸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관계 기관 협의 등(안 제4조)
- 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등(안 제6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논현유수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5년 5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2172호

남동구 논현유수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논현포대근린공원 유수지 물놀이장의 관
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놀이장”이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남동구 논
현동 644-1번지 일원에 설치한 물놀이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
다.
2. “관리자”란 구청장 또는 물놀이장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남동구가 설립한 공단 및 개인·법인·단
체를 말한다.

3. “이용자”란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안전관리요원”이란 관리자가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5. “입장료”란 물놀이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① 물놀이장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이하 “운영기간 등”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제12조에 따라 물놀이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 ④ 관리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운영기간 등을 조정하거나 정기 휴무일을 정한 경우, 즉시 홈페이지와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① 관리자는 물놀이장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② 관리자는 물놀이장의 관리를 위하여 별표 1의 물놀이장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며, 이용자는 별표 2의 물놀이장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이용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관리자 및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5조(입장료) ① 제3조에 따라 물놀이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3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관리자는 입장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입장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입장료의 변경은 별표 3의 입장료 범위 내로 한다.

제6조(입장료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1. 남동구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
2. 남동구민: 100분의 50 감면
3. 별표 4의 입장료 감면대상: 100분의 50 감면

제7조(입장료 반환) ① 관리자는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납부한 입장료 전액을 반환한다.

- ② 납부한 입장료는 물놀이장 입장 전까지 반환할 수 있으며, 물놀이

장 입장 후에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장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손해배상 등) ① 이용자 등이 물놀이장 시설물 및 부대 시설물과 그 밖의 물품을 파손, 훼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설 또는 물품을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9조(이용 제한) ①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물놀이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물놀이장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염병 환자 및 술에 만취한 경우
4. 물놀이장 이용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려는 경우(장애인 보조견 제외)

제10조(보험가입) 관리자는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 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입장료 수입의 처리) 물놀이장 입장료 수입은 남동구 일반회계 수입으로 한다.

제12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남동구가 설립한 공단과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물놀이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 및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물놀이장 안전관리수칙(제4조 관련)

1.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한다.
2. 물놀이장 시설이용 개시 30분 전에 시설물의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3. 당일 물놀이장 운영 종료 후 시설물 설치 내·외 지역의 안전위험 요소를 점검하여야 한다.
4. 매주 1회 이상 물놀이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5. 기계적 장치로 작동되는 시설물의 과부하 방지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일정 시간 가동 후 휴게시간을 두어야 한다.
6. 물놀이장의 안전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한다.
7. 물놀이장의 안전을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 점검 및 계도 활동을 준수한다.
8. 사고발생 시 안전관리요원은 응급조치 후 운영사무실, 관할 병원이나 소방서에 연락하여야 한다.

[별표 2]

물놀이장 이용수칙(제4조 관련)

1. 6세 이하의 영아·유아 또는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2. 입수 전 준비운동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3. 물놀이 시설 이용시 반드시 신발을 벗고 이용 바랍니다.
4. 물놀이 시설 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5. 물놀이 시설 주변에서 뛰거나 장난치지 않습니다.
6. 다이빙, 물에 빠뜨리기 등 위험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7. 돌, 소지품 등을 집어던지지 않습니다.

[별표 3]

입장료(제5조 관련)

(단위: 원)

구분 \ 대상	영아	유아 및 어린이	청소년	성인	비고
입장료	무료	5,000			
연령기준	36개월 미만	-			

[별표 4]

입장료 감면 대상(제6조 관련)

1.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다자녀가정’
2.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4.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한 65세 이상의 사람
5. 국가보훈대상자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해당하는 사람
 -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해당하는 사람
 -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해당하는 사람
 -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에 해당하는 사람
6. 기타대상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법 제7조에 의한 생계·주거급여 대상자
 -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비교
 - 가. 다자녀 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감면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발급 6개월 미만)를 제시하여야 한다.
 - 나. 그 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논현포대근린공원 제2유수지 야외 물놀이장 구성에 따라 시설의 운영기간, 운영방식, 입장료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입장료 및 입장료 감면·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 손해배상, 시설의 이용제한 및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 입장료 세입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5년 5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2173호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남동구 지역의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등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하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으며,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며 이력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하여 품질이 인증된 친환경농수산물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농산물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과 수산물특산물

다.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등록된 축산물가공품

마.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바. 그 밖에 친환경 농·수·축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지역 내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으로 인증된 식품

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수·축산물 및 특산물
4. “친환경 농·수·축산물 수급체계”란 사전협약 등의 방식으로 생산
· 가공·유통과정이 생태 친화적으로 이루어지는 친환경 농·수·
축산물과 그 가공품의 수급체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
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우수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급식경비 지원대상은 남동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및 시설로 한다. 다만, 급식지원 대상 중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교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원신청)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 및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1. 신청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및 시설의 총 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
4. 급식경비·우수 식재료 사용 시 필요한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 시행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방법)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우수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인천광역시 및 교육감·구청장이 학교급식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지원 방법을 협의한 경우 그에 따른다.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남동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학교급식 지원업무 관련 국장, 관할 교육지원청 급식 지원업무 관련 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남동구 의회 의원

나.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교사

라. 인천학교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친환경 농업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바. 학교급식 또는 식생활교육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사. 그 밖에 학교급식 및 관련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학교급식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단, 구체적 지원 기준에 의한 국비·시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지원규모와 방법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 위원장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제9조(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남동구 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
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 등 지원대상 시
설의 장(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사용내역 및 정산서를 매년 사업 종료 후 1개
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급식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회계검사 등에 성
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급식경비 지원금 집행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2. 지원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3. 그 밖에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학교급식법」 등에 따른 학교급식지원 관련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전)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 (후) 남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 : 안 제1조~제3조
- 지원대상, 지원신청, 지원방법 규정 : 안 제4조~제6조
-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안 제7조, 제8조
-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안 제9조
- 지원대상자의 의무 규정 : 안 제10조
- 지도·감독 등에 관한 규정 : 안 제11조
- 준용 규정 : 안 제12조